

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

구분	세부 기준
1. 조직	가.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나.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으로 인 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
2. 인력	가. 상근 또는 비상근 인증심사 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나. 인증심사 인력은 농업 관련 기관·연구소·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유통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
3. 시설 및 장비	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것 가. 사무실 나. 전산장비
4. 인증업무 규정	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규정을 갖추어 것 가. 인증사업장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나.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. 인증심사위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위원의 자체관리·감독에 관 한 사항 라. 인증심사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마.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와 조 치방법에 관한 사항